

의안번호	제856호
의결 연월일	202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노금식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3월 4일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금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56
----------	-----

발의연월일 : 2025년 3월 4일
발의자 : 노금식, 이태훈, 김호경,
박용규, 변종오, 임영은,
황영호

1. 제안이유

폭염만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한파 피해 예방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안전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 “충청북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조례”

나.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도민의 책무, 종합대책 수립, 실태조사, 취약지역 예방활동, 재난도우미 운영, 취약계층 지원, 쉼터 지원, 저감시설 사업 지원,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협의 : 충청북도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라. 조례안 예고 : 예고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를 “충청북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폭염에 의한 인명사고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염으로 인한”을 “폭염·한파에 따른”으로, “건강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을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2호) 중 ““무더위쉼터”란 폭염”을 ““무더위·한파쉼터”란 폭염·한파”로, “무더위를”을 “무더위·한파를”로, “지정해 놓은”을 “지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한파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5. “폭염·한파저감시설”은 폭염·한파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로 별표와 같다.

제3조제1항 중 “폭염으로부터 충청북도민”을 “폭염·한파로부터 충청북도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폭염”을 “폭염·한파”로, “폭염 행동요령”을 “폭염·한파행동요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폭염”을 “폭염·한파”로 한다.

제4조 중 “폭염특보”를 “폭염·한파 특보”로, “시·군”을 “도내 시·군”으로, “폭염행동요령”을 “폭염·한파 행동요령”으로, “폭염 피해”를 “폭염·한파 피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폭염대책을”을 “폭염·한파 대책을”로, “폭염대응”을 “폭염·한파 대응”으로, “폭염대책기간”을 “폭염·한파 대책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폭염”을 각각 “폭염·한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무더위쉼터의 운영”을 “무더위·한파 쉼터의 확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폭염저감시설”을 “폭염·한파 저감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폭염취약계층”을 “폭염·한파취약계층”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폭염”을 “폭염·한파”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폭염대응”을 “폭염·한파대응”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을 “(폭염·한파 취약지역 예

방활동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촌” 을 “폭염 · 한파 특보가 발표되면 농어촌”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 중 “폭염” 을 각각 “폭염 · 한파” 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폭염취약계층” 을 “폭염 · 한파취약계층”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폭염 특보” 를 “폭염 · 한파 특보” 로, “폭염취약계층” 을 “폭염 · 한파취약계층” 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폭염취약계층 지원)” 을 “(폭염 · 한파취약계층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폭염취약계층에게” 를 “폭염 · 한파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로,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을 “지원”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물품” 을 “냉 · 난방 물품”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동 · 하절기 전기요금 지원 사업

제10조의 제목 “(무더위쉼터 지원)” 을 “(무더위 · 한파 쉼터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무더위쉼터” 를 “무더위 · 한파 쉼터” 로, “냉방기” 를 “냉난방기” 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폭염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등)” 을 “(폭염 · 한파 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폭염을” 을 “폭염 · 한파를” 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 “사업을”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폭염저감시설” 을 “폭염 · 한파저감시설”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폭염대응” 을 “폭염 · 한파대응” 으로 하

며, 같은 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폭염저감시설”을 각각 “폭염·한파저감시설”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폭염 안전교육 실시)”를 “(폭염·한파 안전교육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폭염피해”를 “폭염·한파피해”로 한다.

제13조 중 “폭염”을 “폭염·한파”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폭염에 의한 인명사고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염으로 인한 충청북도민의 생명과 건강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u>폭염</u>”이란 <u>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u> <u><신 설></u> 2. “<u>무더위쉼터</u>”란 <u>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군수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u>	<u>충청북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조례</u> 제1조(목적) ----- <u>폭염·한파에 따른 -----</u> ----- ----- <u>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u> -----. 제2조(정의) ----- -----. 1. “<u>폭염</u>”이란 「<u>기상법 시행령</u>」 별표 1에 따른 <u>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u> 2. “<u>한파</u>”란 「<u>기상법 시행령</u>」 별표 1에 따른 <u>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u> 4. “<u>무더위·한파쉼터</u>”란 <u>폭염·한파--- 무더위·한파를 -----</u> <u>지정한 -----</u> --.

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의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1
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
된 소년·소녀가장 세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13세 미만의 어린이

마. 65세 이상의 노인

4. “폭염저감시설”은 폭염피해
를 저감하기 위한 별표의 시
설을 말한다.

<신 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는 폭염으로부터 충청북도민(이
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3. “폭염·한파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
층을 말한다.

<삭 제>

5. “폭염·한파저감시설”은 폭
염·한파 피해를 저감하기 위
한 시설로 별표와 같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 폭염·한파로부터 충청북도
도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폭염으로 인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군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폭염 특보가 발령된 경우 도와 시·군 등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고, 폭염 피해 예방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른 폭염대책을 반영하여 충청북도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대책기간에 이르기 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현황 및 전망
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

② ----- 폭염·한파-----

----- 폭염·한파행동요령-----.

③ -----

----- 폭염

· 한파 -----

-----.

제4조(도민의 책무) ----- 폭염·한파 특보----- 도내 시·군 ----- 폭염·한파 행동요령----- 폭염·한파 피해 -----.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

----- 폭염·한파 대책을 -

----- 폭염·한파 대응 -----

----- 폭염·한파 대책

기간-----.

② -----

-----.

1. 폭염·한파 -----

2. 폭염·한파 -----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운영 및 관리 계획
5.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6.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계획
7.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략)

제7조(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도지사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생략)
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3. 폭염·한파 -----
--
4. 무더위·한파 쉼터의 확충 -
--
5. 폭염·한파 저감시설 -----
--
6. 폭염·한파취약계층-----

7. 폭염·한파 -----

8. ----- 폭염·한파대응----

③ (현행과 같음)

제7조(폭염·한파 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 폭염·한파 특보가 발표되면 농어촌 -----

-----.

1. -----
----- 폭염·한파 -

2. (현행과 같음)
3. ----- 폭염·한파 -----

4. (생 략)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도지사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 6. (생 략)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도지사는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물품 보급 사업

<신 설>

2. (생 략)

제10조(무더위쉼터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시설의 냉방기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4. (현행과 같음)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
---- 폭염 · 한파취약계층-----

-----.

1. ~ 6. (현행과 같음)

② -----
---- 폭염 · 한파 특보---- 폭염 · 한파취약계층-----

-----.

제9조(폭염 · 한파취약계층 지원)
---- 폭염 · 한파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
----- 지원-----
--.

1. 냉 · 난방 물품 -----

2. 동 · 하절기 전기요금 지원 사업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10조(무더위 · 한파 쉼터 지원)
----- 무더위 · 한파 쉼터----- 냉난방기 ---

있다.

제11조(폭염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폭염을 저감하
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
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내 시·군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2. 폭염대응 관련 기관에서 시
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3. (생략)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폭염
저감시설 사업 등을 지원할 경
우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12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도지
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
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
·군,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
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폭염·한파 저감시설 사업
의 지원 등) ① -----
----- 폭염·한파를 -
----- 사업을 -----

-----.

1. -----
폭염·한파저감시설 --
2. 폭염·한파대응 -----
---- 폭염·한파저감시설 --
3. (현행과 같음)

② ----- 폭염
·한파저감시설 -----

-----.

제12조(폭염·한파 안전교육 실
시) ----- 폭염·한
파피해 -----
---.

제13조(협력체제 구축) -----
폭염·한파 -----

-----.

[별표]

폭염·한파 저감시설의 종류(제2조제5호 관련)

폭염저감시설	정 의
지붕차열도장 (쿨루프)	지붕 또는 옥상에 태양광선을 반사하여 건물에 흡수되는 태양열을 저감시킬 수 있는 도료를 시공하여 건물의 실내온도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물안개 분사장치 (쿨링포그)	물 분자를 분사하여 주위의 온도를 낮추는 것으로 미세 물 분자의 기화를 이용하는 냉방장치를 말한다.
도로차열포장	배수성 아스콘 및 차열성 포장을 통하여 노면 온도를 저감시키는 도로포장 방법을 말한다.
그늘막 및 그늘목	도로변과 공공시설 등에 파라솔 등의 설치 및 나무식재를 통해 무더운 여름철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보도나무그늘 만 들 기	여름철 도심 내 보행자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등나무터널 등과 같이 나무를 이용한 자연그늘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수경시설	분수나 호수·인공폭포, 벽천·생태연못 등 물을 이용하여 만든 시설물 또는 조형물을 말한다.
기타시설	상기의 시설물 외에 여름철 도시의 온도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한파저감시설	정 의
스마트쉘터	난방기, CCTV, 각종 편의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겨울철 한파 저감을 위한 임시 쉼터를 말한다.
방풍시설	버스 승강장 등에 방풍벽 및 출입문을 설치하여 찬 바람을 막아 주는 한파 저감 구조물을 말한다.
온열의자	버스 승강장 등에 설치해 겨울철 체온을 유지하거나 한파를 저감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전기히터	실내 공간의 온도를 높여 한파를 저감하기 위한 난방장치를 말한다.
기타시설	상기의 시설 외에 겨울철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의2. <생 략>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폭염대책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7. 한파대책

가. 한파피해 예방대책

나. 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이하 생략>

③ ~ ⑤ <생 략>

⑥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염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2.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
3. 폭염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관리 및 장비의 확보
4. 폭염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5.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별 폭염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3조의4(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한파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2. 지역별 한파대책 마련
3. 한파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관리 및 장비의 확보
4. 한파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5.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별 한파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4조의2(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폭염피해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24조의3(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역별 한파대책의 수립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한파피해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2. 비용발생 요인

-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및 무더위·한파쉼터 지원 폭염·한파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3. 관련조문

- 안 제9조 폭염·한파취약계층 지원
- 안 제10조 무더위·한파 쉼터 지원
- 안 제11조 폭염·한파 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등
- 안 제12조 폭염·한파 안전교육 실시

4.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5 ~ 2029(5년간) 추계
- 폭염·한파 발생시 폭염·한파 취약계층, 무더위·한파 쉼터 지원 및 폭염·한파 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폭염·한파 안전교육 실시

나. 추계 결과

- 2025년부터 향후 5년간 5,010,000천원 소요
- 연 1,002,000천원 소요 예상

다. 재원조달방안

- 폭염·한파취약계층 지원, 무더위·한파쉼터 지원, 폭염·한파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0%(年 1,000,000천원)
- 폭염·한파 안전교육 : 도비 100%(年 2,000천원)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재난안전특교세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세 출		1,002,000	1,002,000	1,002,000	1,002,000	1,002,000	5,010,000
(안 제9조)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260,000	260,000	260,000	260,000	260,000	1,300,000
(안 제10조) 무더위·한파쉼터 지원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안 제11조) 폭염·한파 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등		720,000	720,000	720,000	720,000	720,000	3,600,000
(안 제12조) 폭염·한파 안전교육 실시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재원 조달		1,002,000	1,002,000	1,002,000	1,002,000	1,002,000	5,100,000
의존 재원	소 계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자체 수입	소 계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지방세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	-	-	-	-